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04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태규 · 최수진 · 김기현
최은석 · 강대식 · 김대식
박성민 · 이만희 · 김미애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 논란과 더불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를 마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행사된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최종적인 선택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

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을 “부재자투표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23日”을 “24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수요일”을 각각 “수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수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단서·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을 각각 “수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에 따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⑥ 부재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재자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조 제4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를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제37조의2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選舉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를 각각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3조의2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8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선거일 전 4일이 되는 날(이하 “부재자투표일”이라 한다)”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각각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각각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함”으로, “예상 사전투표자수”를 “부재자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부재자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의 거주·성명·선거인명부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투표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부재자투표신고인과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투표신고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⑥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제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제1항 본문 중 “選舉日”을 “선거일 첫째 날”로, “열고 오후”를 “열고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을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일”로,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을 “부재자투표관리

관은 부재자투표함”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選舉日”을 “선거일 둘째 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투표소를 오후”를 “투표소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부재자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선거일 오후”를 각각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1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4항 단서”로 한다.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3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재자투표신고인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일의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④ 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의 제목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로, “제158조제6항제1호”를 “제15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투표소별”을 “부재자투표소별”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를 “부재자투표일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를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마다”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각각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을 “부재자투표참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를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로 한다.

제163조제4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4조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166조제5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

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 안에서”를 “부재자투표소 안에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를 각각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選舉日”을 “선거일 둘째 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를 “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으로 한다.

제213조제3항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단서 중 “사전투표”를 “부재자투표”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을 “부재자투표일”로 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부재자투표 및 거소투표”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참관인”을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사전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61조제8항제2호바목 중 “사전투표사무원”을 “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u>사전투표기간</u>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 ----- <u>부재자</u> <u>투표일</u>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② (생 략)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투표참관인 · <u>사전투표참관인</u> 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③ ----- ----- ----- <u>부재자투표참관인</u> ----- ----- ----- ----- ----- ----- ----- ----- ----- -----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事務를 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3조(선거기간) ① 選舉別 選舉
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23日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14일

② · ③ (생략)

第34條(選舉日) ① 任期滿了에 의
한 選舉의 選舉日은 다음 各號
와 같다.

_____.

제12조(선거관리) ① -----

----- 부재자투표관리관 -----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six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선거기간) ① -----

1. -----24일
2. -----
-
- 15일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 -----

1. 大統領選舉는 그 任期滿了日 전 70日 이후 첫번째 <u>수요일</u> 2. 國會議員選舉는 그 任期滿了日 전 50日 이후 첫번째 <u>수요일</u>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는 그 任期滿了日 전 30日 이후 첫번째 <u>수요일</u>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舉日前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u>수요일</u>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생략)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	1. ----- -----<u>수요일</u> <u>과 그 다음 날</u> 2. ----- -----<u>수요일</u> <u>일과 그 다음 날</u> 3. ----- -----<u>수요일</u> <u>일과 그 다음 날</u> ② ----- ----- ----- ----- ----- ----- ---<u>수요일과 그 다음 날</u>---.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 -----
---	--

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
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
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
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
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
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3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

-----.

가. -----

-----수요일과
그 다음 날-----.

-----수요
일과 그 다음 날-----
-----.

나. -----

-----수요일과 그
다음 날-----.

다. -----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수요일과 그 다음
날-----.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
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7조의2(부재자투표신고) ① 선
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38조
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선거인
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
·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부재자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부재자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재자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

③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6항은 부재자투표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⑥ 부채자투표신고서의 서식,
부채자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부채자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재자투표소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3. (생략)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부재자투표소-----

--

2. 3. (현행과 같음)

4. 부재자투표소-----

--

5. 부재자투표소-----

5의2.·6. (생략)

⑤ ~ ⑧ (생략)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② ~ ⑨ (생략)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③ (생략)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5의2.·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합·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천재지변, 그 밖의 事故로 인하여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選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다시 選舉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선거인명부(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7조의2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

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
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
舉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
에는 작성된 選舉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
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
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
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4.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선거인명부, 부재
자투표신고인명부 또는 거소·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

-----.

1. (현행과 같음)

2. 부재자투표소-----

3.·4.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략)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

부
재자투표참관인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재자투표소

[illegible]

⑥ _____
_____.

1. _____

가. _____

-----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3조의2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

나. (현행과 같음)

2. -----

-----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3조의2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

⑦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5. (생략)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手當과 식비

7. (생략)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

-----부재자투표참관인-----

7. (현행과 같음)

④ -----
-----부재자투표참관인-----

-----.
-----부재자투표참관인
인-----

에게만 지급한다.

⑤ (생 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부재자투표관리관) ① -----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관리관-----.

②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관리관-----
-----.

③ -----

부재자투표관리관-----

-----.

④ -----부재자투표관리관-----

-----.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

선거일 전 4일이 되는 날(이하 “부재자투표일”이라 한다)-----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소-----.

1. ~ 3. (현행과 같음)

4. -----

---부재자투표소-----

② -----
-----부재자투표소-----

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
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
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
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
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
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

-----, 부
재자투표소-----
-----.

③ -----
-----부재
자투표소-----

-----부재자투표사무원
-----.

④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
표사무원-----

-----.

<삭 제>

⑥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사무원---

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豫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 투표신고인수 · 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⑥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함-----

-----부재자투표신고인수-----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 ⑨ (생략)

<신 설>

⑦ 제1항-----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53조의2(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

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 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투표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부재자투표신고인과 선거일 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투표신고인의 명

단을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⑥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55條(投票時間) ① 投票所는 選舉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舉人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

第155條(投票時間) ① -----
선거일 첫째 날-----열고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
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
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
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
한다.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
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
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内外
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
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
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
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
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
여야 한다.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
상투표는 選舉日 오후 6시(보

-----.

②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
일-----

-----부재자투표소-----

-----.

부재자투표소-----.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관리
관은 부재자투표함-----

-----부재자투표
참관인-----.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
자투표참관인-----

-----.

⑤ 부재자투표-----
-----선거일 둘째 날-----

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생략)

-----.

⑥ -----

-----투표소
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

-----부재자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⑧ -----

-----선거일 둘째 날 오후-----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재자투표자는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자투표신고인명부의 부재자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⑥ 제4항 단서-----

-----.

제158조(부재자투표)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과 부재자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일의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5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④ 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
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
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
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
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
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
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
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
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
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
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 ① 부재
자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참
관인으로 하여금 부재자투표--
-----제158
조제2항-----
-----.
② -----

--부재자투표소별-----부재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천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자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일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③ 부재자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소마다-----

-----부재자투표참관인-----.

④ -----부재자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舉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생략)

-----부재자투표참관인-----.

⑤ 부재자투표참관-----

-----.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참관인-----.

⑥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재자투표소-----

-----.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생략)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연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은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생략)

④ 부채자투표소-----

-----부채자투표관
리관-----부채
자투표사무원-----.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재자투표소-----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재자투표소-----

-----부재자투표관리관-----
-----부재자투표사무원
-----부재자투표
소 안에서-----.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 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

② -----부재자투표관리관-----

-----.

제176조(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부재자투표-----

-----.

<삭 제>

③ -----
-----우편투표함-----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략)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1. 2. (생략)

-----.

④ 우편투표함-----
-----선거일 둘째 날-----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재자투표-----

-----.

1.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 9. (생 략) 10. <u>사전투표소</u>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212조(거소투표·<u>사전투표</u>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u>사전투표소</u>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② (생 략) ③ 동시선거에서 <u>사전투표참관인</u>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부재자투표소</u>----- ----- ----- 제212조(거소투표·<u>부재자투표</u>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 ----- -----. 1. (현행과 같음) 2. <u>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u>-----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부재자투표참관인</u>----- ----- -----
--	---

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④ 同時選舉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規定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

-----.

④ -----부재자투표참관인-----

-----.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 -----

-----.

· 郡選舉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 · 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 · 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無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 (생략)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부재자투표-

②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생략)

② ~ ⑤ (생략)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생략)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

-----.

1. 부재자투표일-----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일 둘째 날 오후-----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

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략)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

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③ -----

-----둘째 날 오후-----

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 ⑥ (생략)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 · ③ (생략)

-----.

④ -----

----둘째 날 오후-----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

-----부재자
투표 및 거소투표-----

-----.

② · ③ (현행과 같음)

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선장 · 입회인
에게 金錢 · 物品 · 車馬 · 響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 7. (생략)

② ~ ④ (생략)

⑤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 직
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
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
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하
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
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
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
役に 處한다.

⑥ ~ ⑧ (생략)

제242조(투표 ·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부재자투표
관리관-----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 · 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

-----.

1. -----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생략)

②·③ (생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

-----부재자
투표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

-----부재자투표사무원-----

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생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u>사전투표사무원</u>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부재자투표사무원</u>----- ----- ----- ----- ----- ----- -----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	--

① (생 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u>사전투표 사무원</u>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생 략)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다. ~ 아. (생 략) 3.・4.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재자투표 사무원----- ----- ----- ----- -----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 아.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⑧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2.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 <u>사전투표사무원</u>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바. ----- ----- ----- ----- <u>부재자투표사무원</u> ----- ----- -----
2의2. ~ 6. (생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u>사전투표관리관</u> ,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 ----- ----- <u>부재자투표관리관</u> ----- ----- -----

